

(1 안)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38조(자산 운용지시등)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증권의 매매 2. 단기대출 3. 간접투자증권(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의 매매 <p><u>(신 설)</u></p> <p>② ~ ④ (생략)</p>	<p>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회사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증권의 매매 2. 단기대출 3. 간접투자증권(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한한다)의 매매 4. <u>외화표시 자산의 거래를 위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이하 “대외지급수단”이라 한다)의 매매거래</u>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부 칙</u>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p>